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조형물 설치관련 특정감사 -

2024. 7. 5.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처분요구 일람표

1. 기부금품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1

2. 조형물 구입 및 설치 부적정 (통보) ····· 11

3. 기본계획 없는 조각공원 부적정 (주의) ····· 1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부금품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청도군은 강원도 ㉮㉯군 거주 ◑◑◑(작가명: §§§§)로부터 기부받은 조형물 “비전 21” 1점을 청도국민체육센터 부지와 “승리의 나팔” 8점을 청도레일바이크 부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1. 기부금품 접수 절차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탁예정자는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로부터 사용용도와 목적이 기재된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청도군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를 사전에 심의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한 후에는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청도군 ▦▦▦▦과는 [표 1]와 같이 ◑◑◑로부터 기부받기로 한 “비전 21” 조형물 1점이 2023. 2. 15. 청도국민체육센터에 부지에 설치되고, “승리의 나팔” 8점의 조형물이 2023. 3. 2. 청도레일바이크 부지에 설치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뒤늦게 2023. 3. 3. ㉮㉮과로 ‘기증물품(조각미술품) 수령 검토 요청’ 공문(▦▦▦▦과-5601)을 발송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다.

[표 1] ◑◑◑ 기부금품 기탁 현황

기탁자	기탁금품 종류	기증물품	지정기탁기관	지정기탁 사유
◑◑◑	미술품	「비전21」 1점, 「승리의 나팔」 8점	청도군	관내 유명관광지 및 시설에 조각미술품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관광하기를 희망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부서에서는 ◑◑◑로부터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지 않아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였는지 여부와 자발적 기탁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도 ◑◑◑에게 지정기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기증물품, 기증자, 기증방법, 기증목적을 기재한 ‘기증물품(조각미술품) 접수 현황 보고’ 문서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위 공문에 첨부하였다.

아울러, 위 부서에서는 2023. 4. 13. ㉮㉮과로부터 ◑◑◑의 조각미술품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금품으로 접수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공문(㉮㉮과-7030)으로 확인하고도 2024. 5. 8.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하였다.

한편, ㉮㉯과는 ◑◑◑로부터 지정기탁서가 제출되지 않아 기탁자의 자발적 의사와 기부목적 등을 확인할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과에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2023. 3. 30.부터 2023. 3. 31.까지 기간 동안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심사 개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인 14명의 가결을 받아 기품금품으로 접수 의결하였다.

2. 공공조형물 심의 부적정

「청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공시설[1]에 공공조형물[2]을 설치할 때에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도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공공조형물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이 반영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 건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도군 ▦▦▦▦과는 [표 2]와 같이 공공시설인 공원에 해당하는 청도레일바이크 부지에 이미 2023. 3. 2. 설치 완료된 "승리의 나팔" 8점에 대하여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뒤늦게 2023. 5. 10. 개최하였고,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개최하면서 장소의 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사전타당성 조사 ·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작품명	규모	재질	설치 수량	설치위치	설치일자	비고
「승리의 나팔」	높이 2.7m	대리석	8점	청도레일바이크부지 중간쉼터	2023. 3. 2.	공원

※ 청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편성 전 사업 시행 등 회계질서 문란

청도군은 ◑◑◑로부터 기부받은 조형물을 ◑◑◑이 소개한 강원도 가나군에 소재한 "◘◘◘"라는 업체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제조·구매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설치하였다.

1) 예산편성 전 사업 시행 및 사후 계약서 작성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여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약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도군 ▦▦▦▦과에서는 2023. 2. 15. 청도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비전 21” 조형물 1점을 설치한 시점 전 계약서 작성없이 강원도 ㉮㉯군 소재의 “◘◘◘”와 ◑◑◑이 기부하려는 조형물에 대한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3. 3. 2. 청도레일바이크 부지 내에 “승리의 나팔” 8점의 조형물 설치가 완료한 후에 이미 설치된 ◑◑◑의 조형물에 대한 설치비를 집행하기 위한 시설비 60,000천 원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세출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2023. 3. 14. ◲◲◲◲◲◲관으로 제출(▦▦▦▦과-6555)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청도군의회 의결(2023. 4. 27.)을 거쳐 확정된 후 2023. 6. 5.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 수의계약 요청’ 공문(▦▦▦▦과-14411)을 ㉶㉶과로 발송하여 계약 의뢰하였다.

한편, ㉶㉶과에서는 2023. 6. 5. ▦▦▦▦과의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 수의계약 요청’ 공문은 이미 설치된 ◑◑◑이 기부한 조형물에 대한 설치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약 요청 당일인 2023. 6. 5. “◘◘◘”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직접 제조·구매한다는 사유로 조형물 설치비 59,230천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 일반조건 이행 확인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 “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문서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물품계약의 경우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제5절 “계약의 이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품계약의 경우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규격서, 용역의 과업내용서, 물품·용역의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착수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위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과로 계약을 의뢰하면서 받침대 등의 물품의 규격서 및 설치공사의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받은 산출내역서만을 첨부하였고, 사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한편, ㉮㉯과에서는 위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에 대한 ▦▦▦▦과의 계약요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과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하지 않고 2023. 6. 5. 계약상대자인 “◆◆◆”와 계약을 확정하고, 2023. 6. 7. 59,230천 원을 집행하였다.

3) 기초금액 작성 부적정 및 원가심사 미실시

「지방계약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표 3]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예정가격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며, 「청도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은 계약원가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발주부서의 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 공사 ·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원가계산 등을 실시

하여 기초금액을 도출하고 계약원가 심사부서에 계약원가심사를 거친 후에 계약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2023. 6. 5. ㉮㉮과에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 수의계약 요청’ 공문(▦▦▦▦과-14411)을 시행하면서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물품 및 설치공사 수의계약의 기준이 될 기초금액을 작성함에 있어 거례실례가격이나 원가검사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계약원가심사도 의뢰하지 아니 하였다.

한편, ㉮㉮과에서는 ▦▦▦▦과가 위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기준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가심사도 거치지 않고 2023. 6. 5. 계약요청을 의뢰했는데도 ▦▦▦▦과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같은 날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수의계약 가격 협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는 계약금액을 확정할 때 계약상대자인 “◆◆◆”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 비교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런데, ㉮㉮과는 2023. 6. 5.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자료를 참작한 사실이 없고 계약상대자인 "◘◘◘"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가격 협의 또는 조정하는 과정없이 계약금액을 확정하였다.

5) 준공검사 확인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청도군에서는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이 계약서상 규격서와 같이 제작되었는지 용역 과업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지를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와 ㉮㉮과에서는 '조형미술품 제작 및 설치사업'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공무원, 검사자, 입회자는 2023. 6. 7. 현장 출장 사실이 없었는데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날인하고, 조형물 설치공사 계약상대자인 "◘◘◘"의 참관하에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인 "◘◘◘"가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며서 공사 위치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로 기재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부금품 접수와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형물 설치에 따른 설치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 시공한 후 예산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청도군에서는 ◑◑◑의 기부 조형물을 문화예술도시 청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빠른 시일 내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설치의 신속성을 중요시한 결과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청도군의 위 의견은 ◑◑◑로부터 기부받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설치할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위 관련자 중 ○○○, ○○○은 **중징계처분**하고, ○○○, ○○○, ○○○, ○○○는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조형물 구입 및 설치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도군에서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의 조형물 20점을 강원도 ▣▣군 소재 ▣▣▣▣미술박물관으로부터 297,000천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1. 미술품 구매 일상감사 미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 ·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청도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 구매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 구매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요청)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가나다라미술박물관으로부터 조형물 20점을 구매하는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미술작품 구입 및 설치'의 제조·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이 297,000천 원으로 일상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관으로 일상감사를 의뢰(요청)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행정재산 사용부서 협의 미실시

청도군 ▦▦▦▦과에서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4) 부지 내에 "새마을운동발상지조형물" 1점을 2023. 6. 23.부터 2023. 6. 26.까지 기간 중에 설치하였다.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청도군의 공유재산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부지는 청도군의 행정재산에 해당되고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부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을 관리하는 ●●●●●과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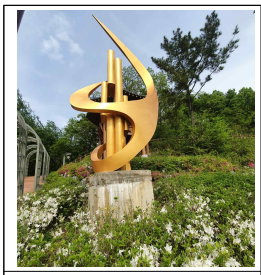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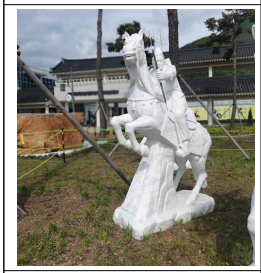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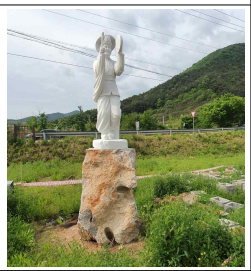
그런데, ▦▦▦▦과에서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부지(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87)에 "새마을운동발상지조형물" 1점을 설치하면서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과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3. 조형물 설치 하중 검토 미흡

청도군 ▦▦▦▦과에서는 가나다라미술박물관으로부터 “무제”을 비롯한 [표 1]와 같이 ◑◑◑ 조형물 19점을 예산으로 구입하여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부지 내에 설치하였다.

[표 1]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조형물 설치 현황

				
1. 무제	2. 달맞이춤	3. 궁마 1	4. 궁마 2	5. 궁마 3
				
6. 궁마 4	7. 궁마 5	8. 화랑 1	9. 화랑 2	10. 화랑 3
				
11. 장고춤	12. 북춤	13. 궁중무	14. 상쇠놀이	15. 승무
				
16. 살풀이	17. 검무	18. 소고춤 1	19. 소고춤 2	

이에 앞서 위 부서에서는 14,000천 원으로 ㉮㉮과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수목이식 및 조각상 기초공사’ 계약(2023. 6. 15.)을 맺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3길 3-xx에 주소를 둔 ㈜◍◍◍◍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내 화랑광장 구역에 위치한 수목 4그루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부지 내 다른 구역으로 이식하고 ◑◑◑의 조형물을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전역에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3]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나. 공사·계약문서의 종류에 따르면 품의서, 계획서, 계약서,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그 밖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의 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조형물의 하중과 설치되는 위치의 지반상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요청한 내용으로 견적서와 공사 산출내역서만으로 설계서[4] 없이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 [표 2]와 같이 조형물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한 기초에 균열이 발생하고 조형물의 받침이 침하 되거나 기울어져 추락할 위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2] 조형물 설치 현황

<table>
<tr>
<td colspan="3"></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3">조형물 받침 기울어짐</td>
<td colspan="2">기초 균열 및 지반 침하</td>
</tr>
</table>

3) 기초공사: 조형물을 받치는 받침을 설치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일정 두께의 콘크리트
4)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4. 조형물 구입 검사 소홀

청도군 ㉮㉮과에서는 ‘미술작품 구입 및 설치 시행’으로 구입한 ◑◑◑의 조형물 20점에 대하여 2023. 6 26. 준공검사를 거쳐 같은 날 가나다라미술박물관으로 자산취득비 예산 297,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앞서 2023. 6. 9. ▦▦▦▦과에서 개최한 ‘청도군 미술작품 가격평가 심의’에서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부지에 설치할 “새마을운동발상지 조형물” 1점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부지에 설치할 “무제” 조형물 1점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25,000천 원으로 가격 평가하였다.

이후 ▦▦▦▦과에서는 ‘청도군 미술작품 구입 및 설치에 따른 가격협의서 제출 요청’ 공문을 2023. 6. 14. 가나다라미술박물관으로 통보하고, 가나다라미술박물관 대표(◭◭◭)로부터 미술작품 총 20점에 대하여 297,000천 원으로 가격협의서를 제출받아 2023. 6. 21.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미술작품 구입 및 설치 시행’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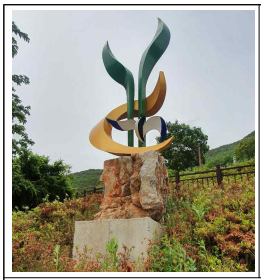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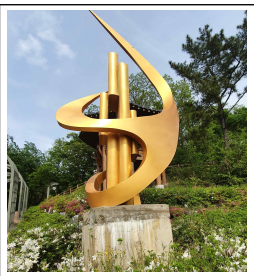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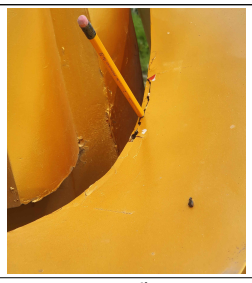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재질 · 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조형물 재질 ·

성능 · 규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재질 · 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미술작품 구입 및 설치' 관련으로 ㉮㉯㉰㉱미술박물관으로부터 구입한 조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소속 공무원 등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 · 설치되어야 할 "새마을운동발상지조형물" 1점과 "무제" 조형물 1점은 실제 철재질로 제작 · 설치(일부 소량 스테인리스 사용)되어 [표 3]과 같이 용접 부위가 부식되고 접합 부위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3] 계약과 상이한 조형물 설치 현황

				
새마을발상지 조형물		무제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계약과 상이하게 제작 · 설치된 ◑◑◑의 조형물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위 관련자 중 ○○○은 **중징계처분**하고, ○○○, ○○○, ○○○은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본계획 없는 조각공원 부적정

소 관 청 청도군

관 계 부 서 ㅇㅇㅇㅇ과

내 용

청도군 ㅇㅇㅇㅇ과에서는 조각공원 조성목적으로 청도읍 운산리 10xx-1번지 외 3필지, 17,330㎡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11억 원의 시설비를 군비 재원으로 편성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4. 가.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취득하는 재산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총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 용역비 · 기타비용이 포함된 재원별 사업비 등의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는 청도군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도군에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용도, 총사업 기간, 재원 및 용도별 사업비 등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청도군 ㅇㅇㅇㅇ과에서는 위 청도읍 운산리 10xx-1번지 등에 조각공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없이 조각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추진배경, 사업기간, 위치, 면적, 부지매입비, 사업내용, 재산취득 현황만을 기재한 '조각공원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계획'을 2023. 9. 15. 군수결재(문서번호: ㅇㅇㅇㅇ과-3058[5])를 받아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2023. 9. 21. ㅎㅎ과에 공문(ㅇㅇㅇㅇ과-59716호)으로 제출하였다.

더욱이, 2023. 10. 10. 청도군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회 공유재산 심의회에 참석한 ㅇㅇㅇㅇ과장은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는 데도 '추진 경위는 9월에 조각공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매입 대상 청도읍 운산리 10xx-1번지 일원의 토지는 일부 지주 협의가 불가하고 조형물 구입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취소하는 '조각공원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재검토(안)'을 2024. 2. 21. 군수결재(문서번호: ㅇㅇㅇㅇ과-12032)를 받아

5) ㅇㅇㅇㅇ과-3058 : 실제 2023. 9. 15. 청도군수 결재를 받았으나, 2024. 1. 15. 문서등록한 것으로 ㅇㅇㅇㅇ과 주장

수립하고 제31회 청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2024. 2. 27. 청도군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각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2024년도 청도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각공원 매입비로 편성된 시설비 1,100,000천 원중 조각공원 조성 편입 토지 감정평가에 사용한 2,998천 원을 제외한 1,097,002천 원을 삭감하는 예산요구서를 2024. 3. 11. □□□□□□□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였으나, 2024. 3. 4. ㉮㉯과에서 □□□□□□□관을 경유하여 청도군의회로 제출한 조각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취소안(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포함)이 제29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2024. 4. 1. 개최 운영위원회)됨에 따라 2024. 5. 8.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 집행과 삭감이 불가능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도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위 관련자 ○○○, ○○○, ○○○은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